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 ①교육감은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자로부터 4,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검정고시에 관련된 각종 제증명서(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 포함)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